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785호 2021. 1. 8.(금)



서	기관의	장
· 결		
_		

고 시

TII.0004 4 =	_ 		/=ı ¬ =ı:	_	-11-11	TI/III 🗀 I		01	
제2021-1호			-		-	-	-		
	실시계	∥획(변경)	인가 정칭	정 고시 "	•••••	•••••	•••••	•••••	2
제2021-2호	거창군기	계획시설(교	1통시설 3	주차장) 시	나업시행 지	사 지정 및	! 실시계 ⁴	획인가 고	. 人I ······· 5
제2021-3호	거창군기	ᅨ획시설(교	<u>]</u> 통시설 =	두차장) 시	<mark></mark> 남업시행지	사 지정 및	일시계 ⁴	획인가 고	.시 ······ 7
제2021-4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	대로3-1	3호선 등	등)사업 실	실시계획인	인가 고시	(
제2021-5호	거창군:	계획시설(공간시설	교통광장	상)사업 실	실시계획(변경)인기	· 고시 ···	13
	7								
공 고									
제2021-113	호 거창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설주차장).	사업 공사	사완료 공	₽	•••••	16
제2021-393	호 「거칭	항군 지하	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u> </u>	•••••	17
제2021-473									
제2021-483									
제2021-493									
제2021-503									
MIZUZI JUS	로 끄네	세6ᆈ 게	ы отс	2N 6T	ОТ				20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1-1호

거창군계획시설(학교:한국승강기대학) 결정(세부시설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정정 고시

『거창한국승강기대학교 실습동 신축공사』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학교:한국승강기대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8조 6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세부시설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거 창 군 수

※정정사유: 오탈자 수정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40-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학교:한국승강기대학) ○ 명 칭 : 한국승강기대학교 실습동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 부지면적 : 56,525 m²

○ 금회시행면적 : 2,815m²

○ 사업내용 : 실습동 신축 당초 건축면적 513.42m², 연면적 1,992.28m²

변경 건축면적 558.00㎡, 연면적 953.9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대표 김천영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120

마.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9. 01. 31. ~ 2021. 02. 28.

○ 변경: 2019. 01. 31. ~ 2022. 02. 28.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주소	지기	컨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선민	十二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	본번	부번	시국	(m²)	(m²)	シャペ しょう	미끄
		계			2,815	2,815		
1	거창읍 송정리	540	1	답	2,255	2,255	학교법인한국 승강기대학	

2	거창읍 양평리	538		전	364	364	학교법인한국 승강기대학	
3	거창읍 양평리	541		전	60	60	학교법인한국 승강기대학	
4	거창읍 양평리	540	2	구	136	136	학교법인한국 승강기대학	

사.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가. 학교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m²)		최 초	비
분	표시 번호	기결정	세 분	71 /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기정	18	한국승강기 대학	대학	거창읍 송정리 700번지 일원	56,525	_	56,525	경고465호 ('92.12.24)	

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건 물 명	부지면적 (m²)	구성비 (%)	건축면적 (m²)	건축연면적 (m²)	규 모	비고
	1	본관동	2,828.0	5.0	819.69	2,391.01	지상3층	
	2	제1공학관	2,083.0	3.2	1,471.24	2,673.98	지상2층	
	3	제2공학관	1,826.0	3.8	1,565.73	3,945.97	지상3층	
	4	창조관	683.0	1.2	570.44	2,383.98	지하1층 지상4층	
교 육 기 본 시 설	5	실습동	3,068.0	5.4	513.42 558.00	1,992.28 953.91	지상4층 지상3층	변경
, ,	6	도서관	2,802.0	5.0	1,395.63	4,698.36	지상4층	
	7	연구동	701.0	1.2	370.90	717.60	지상2층	
	8	에스컬레이터 실습동	545.0	1.0	371.28	371.28		
		소 계	14,536.0	25.7	7,078.33 7,122.91	19,174.46 18,136.09		
	9	복지후생관	1,381.0	2.4	725.53	1,724.03	지하1층 지상2층	
	10	기숙사	4,904.0	8.7	2,176.26	10,088.76		
지 지 원 시 설	10-1	제1기숙사			1,382.5	4,060.50	지상3층	
시 설	10-2	제2기숙사			793.76	6,028.26	지하1층 지상6층	
	11	민 원실	93.0	0.2	33.93	33.93	지상1층	
		소 계	6,378.0	11.3	2,935.72	11,846.72		
기 타	12	운동장	7,864.0	13.9				
시 설	13	농구장	931.0	1.6				
				2				

	14	테니스장	1,421.0	2.5			
	15	광 장	1,415.0	2.5			
	16	도로 및 주차장	14,129.0	25.0			
		소 계	25,760.0	45.6			
녹 지	17	녹 지	9,851.0	17.4			
	합계		56,525.0	100.0	10,014.05 10,058.63	31,021.18 29,982.81	

◉거창군 고시 제2021-2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29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 명 칭 : 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시 행 규	구 모(m²)		-1 -	
l	종류 시설명		위	え]	결정면적		금회시행		최 초 결정일	비고
					설생년석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거창군 송정리 1		1,499.1	1,499.1	894.75	894.75	경상남도 고시 제2014-249호 (2014.7.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태근 외 3인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26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1.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m²)	(m²)	주소	성명	지분	권리명	권리자			
합계	_	_	_	1,499.1	1,499.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26	이태근	1/4			
	거창읍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양4길 20	김극주	1/4			
1	송정리	1129	차	1,499.1	1,499.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4길 24	장인숙	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세동네2길 40, 203동 1902호	김수정	1/4			

◉거창군 고시 제2021-3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 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0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 명 칭 : 거창 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종류 시석명					시 행 규	- 모(m²)		-) -	
l	종류	시설명	위	위 치	결정면적		금회시행		최 초 결정일	비고
l					결정한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거창군 송정리 1		1.512.8	1.512.8	1,196.07	1,196.07	경상남도 고시 제2014-249호 (2014.7.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최 민 식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21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1.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번호 		. –		(m²)	(m²)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_	_	1,512.8	1,512.8								
1	거창읍 송정리	1102	차	1,512.8	1,51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21	최민식						

◉거창군 고시 제2021-4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3-13호선 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가조 마상오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거 창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80-9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3-13호선 등)사업
 - 명 칭 : 가조 마상오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3. 사업면적 및 규모
 - 북단교차로 : A=2,339m²(회전교차로 및 교통섬)
 - 남단교차로 : A=2,628m²(회전교차로 및 교통점)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건설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1) 북단교차로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	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고 세 시	시킨 	시국	(m²)	(m²)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7,825	2,339					
1	가조면 마상리	80-9	답	24	24	가조면 지산로 1474	변현태			
2	가조면 마상리	699-9	구	6,809	205		국(농림수산 부)			
3	가조면 마상리	708-2	도	995	402	가조면 수월리	김임권			
4	가조면 마상리	708-10	도	66	29		이영택			
5	가조면 마상리	80-7	답	87	87		경상남도			
6	가조면 마상리	400	구	3,395	96		국(농림수산 부)			
7	가조면 마상리	81-1	답	37	37		경상남도			
8	가조면 마상리	80-4	답	6	6		경상남도			
9	가조면 마상리	399-5	답	112	112	서울 강동구 암사동 447-8	전원순			
10	가조면 마상리	399-4	답	177	177	가조면 마상리230-1	신정재			
11	가조면 마상리	243-7	도	3	3		국(내무부)			
12	가조면 마상리	243-2	도	129	129	-	하경팔			
13	가조면 마상리	399-3	도	37	37		거창군			
14	가조면 마상리	243-4	도	93	93	_	하경팔			
15	가조면 마상리	398-3	답	3	3	가조며 마상리 308	유옥조			
16	가조면 마상리	398-1	도	74	24		거창군			
17	가조면 마상리	245-4	도	182	29	-	김문주			
18	가조면 마상리	245-6	도	250	59	가조면 마상리 279	김해김씨종 중			
19	가조면 마상리	243-5	도	17	17	-	하경팔			
20	가조면 마상리	245-7	도	13	2	가조면 마상리 279	김해김씨종 중			
21	가조면 마상리	245-2	도	397	68	_	김문주			
22	가조면 마상리	91-2	답	94	31		경상남도			
23	가조면 마상리	91-3	답	51	18		경상남도			

						T		1	T	
24	가조면 마상리	91-11	답	308	4		경상남도			
25	가조면 마상리	82-2	답	30	30	서울 은평구 역촌동83-65	김영곤			
26	가조면 마상리	81-2	답	20	20	가조면 마상리 268	전판진			
27	가조면 마상리	87-3	도	2,236	107		국(농림수산 부)			
28	가조면 마상리	91-9	답	64	64	서울 송파구 오금동 44	문재운			
29	가조면 마상리	91-9	답	294	96		경상남도			
30	가조면 마상리	91-8	답	78	78		경상남도			
31	가조면 마상리	91-7	답	249	249		경상남도			
32	가조면 마상리	550-2	노	1,495	3		국(농림수산 부)			

2) 남단교차로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면적		소유자		소유	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 II / I	/ U	719	(m²)	(m²)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_	11,557	2,628					
1	가조면 마상리	147-1	도	1,972	315		거창군			
2	가조면 마상리	155-5	전	238	186		경상남도			
3	가조면 마상리	152-1	공	10	10		거창군			
4	가조면 마상리	150-3	전	28	1		거창군			
5	가조면 마상리	861-34	도	702	114		국(국토교통 부)			
6	가조면 마상리	170-2	도	56	8	가조면 마상리 311	장홍득			
7	가조면 마상리	151-3	도	18	18	가조면 마상리 326	전영주			
8	가조면 마상리	151-1	도	66	54	_	이우환			
9	가조면 마상리	189-6	도	763	40		거창군			
10	가조면 마상리	155-1	도	43	43	가조면 마상리 262	최정태			
11	가조면 마상리	155-6	도	156	156	가조면 마상리 262	최정태			
12	가조면 마상리	155-8	도	122	122		거창군			
13	가조면 마상리	170-11	답	39	32		거창군			
14	가조면 마상리	155-2	답	11	11	가조면 마상리 262	최정태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	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고 세 시	/\U	717	(m²)	(m²)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5	가조면 마상리	170-6	답	6	6		거창군			
16	가조면 마상리	167-10	답	473	296		거창군			
17	가조면 마상리	167-1	답	7	4		거창군			
18	가조면 마상리	168-1	답	443	180		거창군			
19	가조면 마상리	168-2	답	17	17		거창군			
20	가조면 마상리	860-1	천	5,272	95		국(국토교통 부)			
21	가조면 마상리	155-18	답	293	230		경상남도			
22	가조면 마상리	155-20	답	58	58		거창군			
23	가조면 마상리	155-11	도	227	211		거창군			
24	가조면 마상리	161-1	천	64	1	가조면 지산로 1466	이현란			
25	가조면 마상리	162-9	천	51	33		경상남도			
26	가조면 마상리	167-3	도	109	109	_	정규수			
27	가조면 마상리	166-2	도	96	96	_	정규수			
28	가조면 마상리	166-3	도	16	16	_	정규수			
29	가조면 마상리	166-6	도	11	11	_	정규수			
30	가조면 마상리	166-7	도	9	9	_	정규수			
31	가조면 마상리	167-11	답	32	12		거창군			
32	가조면 마상리	167-4	도	7	7	17	박외수			
33	가조면 마상리	167-12	천	5	5		거창군			
34	가조면 마상리	167-5	노	23	23	_	이지구			
35	가조면 마상리	167-9	천	56	44	가조면 마상리 190-4	마청범			
36	가조면 마상리	165-2	대	3	3	가조면 마상리 190-4	마청범			
37	가조면 마상리	166-9	천	11	8	가조면 마상리 190-4	마청범			
38	가조면 마상리	166-10	구	8	8		농어촌공사			
39	가조면 마상리	166-11	천	16	16	가조면 마상리 190-4	마청범			
40	가조면 마상리	169-3	대	20	20		거창군			

◉거창군 고시 제2021-5호

거창군계획시설(공간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공간시설:교통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거 창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79-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공간시설:교통광장)사업
 - 명 칭 :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 3. 사업면적 및 규모
 - 사업 면적 : A=20.079m²
 - 사업 규모 : 광장 A=20,079 m²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건설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2019. 06. 27. ~ 2020. 10. 30.
 - 변 경 : 2019. 06. 27. ~ 2021.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유권 의 권리	刊
번호	" '	, _	' '	(m²)	(m²)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고
합계				48,947	20,079								
1	거창읍 대평리	888-1	답	2,003	2,003				거칭	군			
2	거창읍 대평리	874	답	1,997	1,997				거칭	군			
3	거창읍 대평리	868-1	도	632	265				국(농림*	수산부)			
4	거창읍 대평리	10-2	구	28,732	1,025				국(농림*	수산부)			
5	거창읍 대평리	820	답	1,706	1,706				거칭)군			
6	거창읍 대평리	806	답	517	147				거칭	군			
7	거창읍 대평리	807	답	245	245				국(국토	교통부)			
8	거창읍 대평리	821	답	2,202	2,202				거칭	군			
9	거창읍 대평리	808	답	750	750				거칭	군			
10	거창읍 대평리	810-1	답	160	160				거칭)군			
11	거창읍 대평리	810-10	답	319	319				국(국토	교통부)			
12	거창읍 대평리	868-2	도	56	56				국(농림*	수산부)			
13	거창읍 대평리	879-3	도	493	493				거칭)군			
14	거창읍 대평리	879-1	도	1,314	1,314				국(국토	교통부)			
15	거창읍 대평리	879	답	129	129				국(국토	교통부)			
16	거창읍 대평리	878-2	답	131	131				국(국토	교통부)			
17	거창읍 대평리	878-1	답	262	262				거칭	}군			
18	거창읍 대평리	878	답	360	360				거칭	}군			
19	거창읍 대평리	877	답	258	258				거칭	} 군			
20	거창읍 대평리	876	답	1,028	1,028				거칭	}군			
21	거창읍 대평리	875	답	1,028	1,028				거칭	}군			
22	거창읍 대평리	892	답	123	123				국(국토.	교통부)			
23	거창읍 대평리	891-1	답	148	148				국(국토	교통부)			
24	거창읍 대평리	891	답	880	880	거창군 상림리			유우	-연			

								거창군		
25	거창읍 다	11 5월 리	890	답	1,005	1,005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	유우연		
	//6日	117314	090	H	1,003	,005 1,005		거창군		
26	거창읍 다	기더기	889	답	1,005	1,005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	유우연		
	//6日	117314	009	H	1,005	1,003		거창군		
27	거창읍 더	개평리	810-6	도	14	14		국(국토교통부)		
28	거창읍 더	개평리	810-7	답	183	183		거창군		
29	거창읍 더	개평리	808-5	답	270	270		국(국토해양부)		
30	거창읍 더	개평리	808-7	답	442	442		국(국토교통부)		
31	거창읍 더	개평리	821-1	답	36	36		국(국토해양부)		
32	거창읍 디	개평리	807-5	답	519	95		국(국토해양부)		

◉거창군 공고 제2021-11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8-102호(2018.8.23.)로 실시계획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거 창 군 수

-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1-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주차장 정비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 A=4,810.0 m²
 - 사업의 규모: 건축면적 A=1,446.61 m², 연면적 A=1,446.61 m²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거창군수(산림과장)
- 4. 사업시행기간 : 2018. 8. 23. ~ 2019. 03. 29.
-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1-39호

「거창군 지하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하수 조례」

2. 개정이유

O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에 관련한 「지하수법」단서에 따라 이행 보증금 감액기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군민 감경혜택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O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액기준 신설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 제항 단서에 의하면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감액기준 신설

- 4. 개정조례안 : 붙임
- 5. 입법예고 기간 : 2021. 1. 7. ~ 2021. 1. 27.(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513
 - FAX: 055)940-3759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 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기상 조과 2백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ᅔ	창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刊	고

관계 법 령

□ 「지하수법」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하수법 시행령」

-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u>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u>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2. 30.>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 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 ⑥ 삭제 <2001. 12. 19.>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

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1., 2018. 6. 8.>

[전문개정 2012. 2. 23.]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 ·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8.

거 창 군 수

- 1. 사업지구의 명칭 : 2019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 / 지동지구
- 2. 사업시행자 : 거 창 군 수
- 3.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124필, 32,899.8m²
-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참조
- 5. 공람기간 : 2020. 1. 8. ~ 2020. 1. 21. / 14일간
- 6. 공람장소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 7. 공람 비치서류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 8. 문의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
-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21-48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 [민투표 청구권자	청구에 필요한	нэ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연 서 주민수	비고	
52,709	52,668	41	5,271	청구권자 총수의 1/10 이상	

2021년 1월 8일

거 창 군 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거창군수 및 거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군수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15/100)	읍·면별 최소서명인 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조건
계	52,677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의
거창읍	33,258		527	서명을 받되, 4개 읍·면
주상면	1,453		218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웅양면	1,753		263	서명을 받아야함
고제면	1,351		203	
북상면	1,447		218	
위천면	1,794	7,902	270	
마리면	1,879		282	
남상면	2,220		333	
남하면	1,352		203	
신원면	1,412		212	
가조면	3,477		522	
가북면	1,281		193	

■ 군의회 의원

선거구	읍·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20/100)	읍·면별 최소 서명인 수	비고
합	· 계	52,677			
가 선거구	거창읍 (상동 제외)	27,117	5,424	5,424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계	11,261			○해당 선거구 안의
	거창읍(상동)	6,141	2,253	113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나 선거구	북상면	1,447		113	-
	위천면	1,794		113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마리면	1,879		113	
	계	5,838			o해당 선거구 안의
	주상면	1,453		59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다 선거구	웅양면	1,753	1,168	59	서명을 받되, 2개 면
	고제면	1,351		59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가북면	1,281		59	
	계	8,461			○해당 선거구 안의
	남상면	2,220		85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라 선거구	남하면	1,352	1,693	85	서명을 받되, 2개 면
	신원면	1,412		85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가조면	3,477		85	최소서명인 두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2021년 1월 8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21-50호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및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명)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청구에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영주의 체류 자격취득 후 3년 경과자)	필요한 연 서 주민수	비고
52,708	52,668	40	1,055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2021년 1월 8일

거 창 군 수